

#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 건

## 1. 관련근거

-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

2. 추천 의뢰 부서 : 청소행정과-19470호(2020.07.10.)

2. 추천 사유 : 위원 사임에 따른 재추천 요청

3. 추천 인원 : 구의원 1명

###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

주변영향지역(주변영향지역이 결정·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,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)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를 위촉하지 아니하고, 주민대표 대신 해당 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의회의원 각 4명과 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명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한다.

※ 위원 임기는 2년, 연임가능: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  
(제8기 위원 위촉기간: 2019.4.26.~2021.4.25.)

## 4. 추천자(안)

- (신규)정혜경 의원
- (현)김기석 의원
- (현)김진천 의원
- (현)권이승 교수(전문가)
- (현)이동훈 교수(전문가)